

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

(제정) 2009-04-06 조례 제 387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·보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시설물”이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물을 말한다.
2. “인증”이란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 및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인증) ① 도지사는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발굴·보급을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선정하여 인증서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수 디자인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(이하 “인증마크”라 한다)를 3년간 표시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이 인증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8조의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제4조(인증기준) 우수 공공시설물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.

1.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및 재질·색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우수하게 구성되는 등 탁월할 것
2.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성, 사용편의성, 경제성이 있을 것
3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할 것

제5조(인증신청) ①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우수 공공시설물의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우수 공공시설물의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교통시설물, 위생시설물, 휴게시설물, 광고시설물, 보행시설물, 판매·관리 시설물,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 시설물로 한다.

③ 인증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인증제외대상) 제5조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상표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 국내의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시설물
2.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
3.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시설물 인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제7조(인증심사위원회) 우수 공공시설물의 인증에 필요한 심사는 「경기도 공공디자인 조

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.

제8조(인증마크의 사용기준)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외관·기능 등 상태가 인증 당시와 동일한 인증시설물과 해당 인증물의 포장·설명서 및 유인물
2.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상

제9조(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) ① 도지사는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도, 시·군 및 도내 공공기관에 적극 사용 또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